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11.(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해영 의원 외 12명**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차해영 의원 외 12명

○ 제안일: 2026. 8. 21.

○ 회부일: 2026. 8. 24. (의안번호 : 26-100)

2. 제안이유

○ 지정 유효기간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나. 재지정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항제5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및 제22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제33조(사업)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8. 24.~ 8. 29.(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재지정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비상구 개방 외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 관련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시 조례 운영 4개구(마포, 용산, 서대문, 광진)중 용산구와 광진구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유효기간 자체가 없음.

안 제6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개정시 명확한 조문으로 행정의 자의성이 확대해석 될 개연성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대체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 결과 춤 허용 일반음식점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검사확인서는 춤 허용 일반음식점 내 소방 및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하다는 회신(2025. 4. 9)을 받음.

안 제9조제1항제5호와 관련해서는 비상구 상시 개방 조항의 적용범위 확대 따라 비상구 항시 개방과 더불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상시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위 생 과	권동희 (9190)	허 정 (919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위생과 황명진
연 락 처	02-3153-9192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다중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1. 1. 5., 2023. 1. 3.>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2021. 11. 30.>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5. 10. 1.>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21., 2024. 2. 6., 2025. 10. 1.>

④ 안전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 10. 1.>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춤 허용업소 현황 (2025년 재지정 기준)

연번	영업소명	소재동	전체 면적(㎡)	객석 면적(㎡)	비고
1	지그재그	서교동	224.13	90	
2	사보타지	서교동	138.84	70	
3	비원(B1)	서교동	197.38	90	
4	몽스	서교동	362.45	109	
5	25	서교동	183.21	80	
6	아우라	서교동	333.38	175	멸실
7	라로사	서교동	167.85	95	
8	스니커스홍대	서교동	90.49	35	
9	중독	서교동	97.56	58	
10	싱크홀	서교동	136.17	65	
11	데빌	서교동	145.98	70	
12	에프에프	서교동	84.68	50	
13	버뮤다	서교동	692.42	202	
14	아우라투	서교동	280.51	140	
15	도깨비	서교동	308.68	110	
16	브라운	서교동	222.69	85	
17	인클	서교동	99.47	85	
18	어썸레드	서교동	618.23	295	
19	인클 앤 어썸	서교동	291.81	150	
20	벌트	합정동	106.94	50	
21	볼트(VVLT)	서교동	109.12	50	
22	디스	서교동	118.04	60	
23	애드	서교동	274.7	127	
24	팔로우	서교동	234.39	110	
25	롤리	서교동	225.95	105	
26	만선호프	서교동	161.3	75	
27	라밤바	서교동	182.8	77	
28	서울펍	서교동	148	80	
29	도즈서울	서교동	143.52	85	
30	신호등포차	서교동	289.95	145	

연번	영업소명	소재동	전체 면적(㎡)	객석 면적(㎡)	비고
31	마실	서교동	194	80	
32	썰스데이파티	서교동	268	105	
33	밍	서교동	162.5	95	
34	앰비션	서교동	95.92	45	
35	메타	서교동	117	50	
36	소셜꼼애야	서교동(동교동)	122.3	37	
37	포차플러팅	서교동	503.6	260(1F:130,2F:130)	
38	야마뜨	서교동	86.38	36	
39	어텐션	서교동	207.09	75	
40	스팟	서교동	329.41	150	
41	자색	서교동	187.94	75	
42	노이즈베이스먼트투	서교동	522.22	245	
43	마익스케빈	서교동	152.77	84	
44	클럽웨티	서교동	357.68	90	
45	오션	서교동	357.8	120	
46	라프로	서교동	126.99	70	
47	잼	서교동	124.8	60	
48	연트럴줄리아나	서교동(동교동)	118	70	
49	헨즈 컬처	서강동(상수동)	243.83	90	
50	막무	서교동	214.11	105	
51	엑스엑스	서교동	136.08	70	
52	박스서울	서교동	144.76	70	
53	오리엔탈라운지	서교동	216	135	
54	도깨비더배트	서교동	493.59	232	

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

OOO(시·도) OOO(시·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재지정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다음 페이지 계속 ===

4.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질의 회신결과

마 포 소 방 서

수신 마포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질의 결과 회신

1. 마포구청 위생과-2359(2025.2.11)호,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관련 질의"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르며, 귀 기관의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신청"시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발급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제4항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 나 업종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참고 사항
- 최신의 안전점검결과가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적(분기 1회이상)으로 점검하고 보관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참고하여 활용하는 방법 또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적(연1회 이상) 점검하는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5. 전기안전 관리법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재발급 질의 회신 결과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신 마포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점점검확인서 관련 질의" 회신

1. 마포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위생과-2473(25.2.13)호 질의에 따른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안전한 구정 수립에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 ㅇ 질문1 : 재지정 신청시 전기안전점검 가능 여부
 답변1 : 전기안전점검은 신규 또는 전기설비 변경 시만 가능
- ㅇ 질문2 : 재지정 시 영업주의 신청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한 안전성 확인 여부
 답변2 : 전기안전진단은 영업주 신청에 따라 가능

□ 기타사항
- ㅇ 전기안전점검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13조에 따른 업종의 전기시설물
- ㅇ 전기안전진단 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 전기설비 및 점주 요청 시
- ㅇ 안전점검, 안전진단 시기 : 신설 또는 변경, 업종 변경, 명의변경 시. 끝.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본부장

★과장	류중용	부장	이창우	본부장	김한상	2025. 2. 17.
협조자						

시행 서울(기술진단부)-882 (2025. 2. 17.) 접수 위생과-2724 (2025. 2. 17.)

우 04111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73 / https://www.kesco.or.kr
02-6488-6253(801253

6. 식품의약품 안전처 질의회신 공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서울특별시장(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참고 자치법규안」 관련 질의 회신

1. 관련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6718호(2025. 3. 14.)

2.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참고 자치법규안」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배경>

○ 식약처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및 '전기안전검사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발급 기관(소방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법령에 따른 대상 업종(유흥, 단란주점)이 아니므로 발급불가 통보

<질의내용>

○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에서 대안으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기안전진단'(「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을 제시

○ 참고 자치법규안에 규정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및 '전기안전검사확인서'를 상기 대안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가능한 경우 조례 개정 예정)

<회신내용>

○ 춤 허용 일반음식점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검사확인서는 춤 허용 일반음식점 내 소방 및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갈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